

## 8. 住宅建設基準等に 관한 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23號 1991.12.2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규정은 영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체품질관리시험항목:별표 6의2와 같다.

③ 주택자재생산업자는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기준에 따라 보유하는 시험기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계량법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조립식부재의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제2항중 “건설부소속 1급공무원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를 “국립건설시험소장이”로 하고, “건설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표 6]중 1란·3란·4란·6란·9란·11란 및 17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의 2란 나의 (2)중 “흡수율:16퍼센트 이하”를 “흡수율(24시간):15퍼센트 이하”로 하며, 동표에 6의2란 및 비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통벽돌

가. 치수

(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L 4201)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p>(2) 겉모양:벽돌쌓기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강도를 저하시키거나 내구성을 해치는 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 : 1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p> <p>(2) 흡수율(24시간) :15퍼센트 이하</p>
--	--

3. 시멘트 벽돌	<p>가. 치수</p>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F4004)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p> <p>(2) 겉모양: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8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p>
4. 속빈시멘트블록	<p>가. 치수</p>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F4002)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p> <p>(2) 겉모양: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균열 또는 흠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4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p>

6. 콘크리트조립식부재	내력벽판	<p>가. 치수</p>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벽판(KS F 4722)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내력벽판의 모듈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같음한다.</p> <p>(2) 겉모양: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p> <p>(2)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이하</p>
	바닥판	<p>가. 치수</p>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바닥</p>

		<p>판(KS F 4726)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바닥판의 모두올치수는 별표 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같음한다.</p> <p>(2) 겉모양: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خم·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소비품의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p> <p>(2) 내분포압성: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바닥판(KS F 4726)의 내분포압성에 의한다.</p> <p>(3)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 이하</p>				
	지붕판	<p>가. 치수</p>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KS F 4729)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의 부속서에 의한 지붕판의 모두올치수는 별표2의 치수 및 기준척도로 같음한다.</p> <p>(2) 겉모양: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خم·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3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p> <p>(2) 내분포압성: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콘크리트지붕판(KS F 4729)의 내분포압성에 의한다.</p> <p>(3)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이하</p>				
	기 등	<p>가. 치수</p> <p>(1) 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p> <p>(2) 허용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밀리미터)</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구 분</td>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허 용 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높 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 5</td> </tr> </table>	구 분	허 용 차	높 이	± 5
구 분	허 용 차					
높 이	± 5					

		너 비	± 3
		보울트 위치	± 2
		(3) 겹모양: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خم· 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품질	
		(1) 압축강도: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2)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이하	
	보	가. 치수	
		(1) 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2) 허용차	
		(단위:밀리미터)	
		구 분	허 용 차
		길 이	± 5
		너비·높이	± 3
		보울트 위치	± 2
		(3) 겹모양: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خم· 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품질	
		(1) 압축강도: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2)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이하	
	개단	가. 치수	
		(1) 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2) 허용차	
		(단위:밀리미터)	
		구 분	허 용 차
		길 이	± 7
		단높이 및 너비	± 3

		보울트 구멍위치	$\pm 2$
		(3) 겉모양: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 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품질	
		(1) 압축강도: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2)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이하	
	기타	가. 치수	
		(1) 치수:설계치수에 의한다.	
		(2) 허용차	
		(단위:밀리미터)	
		구 분	허 용 차
		길 이	$\pm 7$
		너 비	$\pm 3$
		두께	+ 5, - 2
		대각선치수차	+ 10, -2
		(3) 겉모양:구조 또는 마감에 지장이 있는 뒤틀림·비틀림·흠· 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나. 품질	
		(1) 압축강도:설계기준강도이상. 다만, 상비품의 경우에는 300 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경량콘크리트부재는 180킬로그램/ 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2)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 이하	

6의 2. 경량기포 콘크리트조립식 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	가. 치수
	(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KS F 4914)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
	(2) 겉모양:60센티미터의 거리에서 보이는 균열이 없어야 하 며, 사용에 지장이 있는 휨·움푹패인 곳·기포얼룩 또는 깨

	<p>진 곳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3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p> <p>(2) 휨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 4914)의 휨강도에 의한다.</p> <p>(3) 골재의 염분함유량:0.02퍼센트이하</p>
--	---

9. 알루미늄 창호 및 틀	창 호	<p>가.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합금제 창(KS D 7038)의 치수 및 허용차와 알루미늄합금제 문(KS D 7039)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p> <p>나. 겉모양: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합금제 창(KS D 7038)의 겉모양과 알루미늄합금제 문(KS D 7039)의 겉모양에 의한다.</p>
	틀 재	<p>가. 치수</p>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KS D 6759)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p> <p>(2) 겉모양:모양이 바르고 다듬질이 양호하며 균일하고, 사용에 지장이 있는 부풀음·흠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인장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KS D 6759)의 품질기준에 의한다.</p>

11. 합성수지 창호 및 틀	창 호	<p>가.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p> <p>나. 겉모양:매끈하고, 갈라짐·비틀림·찢김·요철등의 결함이 없어야 하며, 그밖의 사항은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겉모양에 의한다.</p>
	틀 재	가. 치수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p> <p>(2) 겉모양:매끈하고, 갈라짐·비틀림·찢김·요철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인장강도:400킬로그램/제곱센티미터이상</p> <p>(2) 충격강도:20킬로그램·센티미터/제곱센티미터이상</p>
--	---

<p>17. 가압시멘트판 기와</p>	<p>가. 치수</p> <p>(1) 치수 및 허용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 기와(KS F 4029)의 치수 및 허용차에 의한다.</p> <p>(2) 겉모양:갈라짐·잔구멍·뒤틀림·압축·빠짐등의 결함과 반점·칠얼룩 및 백화가 없어야 하며, 보이는 면은 완전히 피복도장되어 벗겨짐·부풀음 등이 없어야 한다.</p> <p>나. 품질</p> <p>(1) 휨파괴하중:90킬로그램 이상</p> <p>(2) 흡수율:10퍼센트이하</p>
----------------------	---

\* 비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격에 의한 치수 및 품질에 의할 수 있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행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생산하는 주택자재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호서식]의 (앞면)·[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③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3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

[별표 6의2]

자체품질관리시험항목(제17조제1항제1호 관련)

품 목	시 험 항 목
보통벽돌·보통블록·시멘트벽돌·속빈시멘트블록·고압벽돌·고압블록·토공벽돌·토공블록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의 검사(이하 “치수검사”라 한다)와 압축강도시험
보통시멘트기와·토공기와·가압시멘트판기와	치수검사 및 휨파괴하중시험
콘크리트조립식부재·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	치수검사·압축강도시험·내분포압성시험(콘크리트조립식 부재중 바닥판 및 지붕판의 경우에 한한다)·휨강도시험(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경우에 한한다)및 골재의 염분함유량 시험
목재창호 및 틀·콘크리트창호 및 틀·철재창호 및 틀	휨강도시험(콘크리트창호 및 틀의 경우에 한한다)및 치수검사
알루미늄창호 및 틀·합성수지창호 및 틀	인장강도시험(창호를 가공 또는 조립만 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및 치수검사

[별표 7]

주택자재 품질검사기준(제21조 관련)

품 목	검 사 항 목 및 방 법
1. 공통사항	<p>가. 검사시료의 채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램덤샘플링방법(KS A 3151)에 의한다.</p> <p>나. 치수·허용차 및 겉모양(이하 “치수등”이라 한다):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금속제 끝은 자(KS B 5246)의 최소눈금 1밀리미터이하의 끝은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p> <p>다. 합격판정:검사시료 전부가 별표 6의 주택자재의 치수 및 품질에 합격하여야 그 로트가 합격한 것으로 한다.</p>



	<p>라. 자체품질관리: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품질관리시험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 로트의 크기를 2배(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내분포압성시험 및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의 휨강도시험의 경우에는 4배)로 할 수 있다.</p>
2. 보통벽돌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 4201)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 4201)의 흡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만매당 5매</p>
3. 보통블록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보통벽돌의 압축강도의 시험방법과 같다.</p> <p>(2) 흡수율:보통벽돌의 흡수율이 시험방법과 같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천매당 5매</p>
4. 시멘트벽돌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 F 4004)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만매당 5매</p>
5. 속빈시멘트블록	<p>가. 치수등: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 4002)의 모양 및 치수와 공통사항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 4002)의 전체의 단면적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천매당 5매</p>
6. 보통시멘트기와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휨파괴 하중: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휨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흡수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천매당 5매</p>
<p>7.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기둥·보·계단 등)</p>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콘크리트압축강도시험방법(KS F 2405)에 의하여 사용 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p> <p>(2) 내분포압성(바닥판 및 지붕판에 한한다):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조립용 콘크리트바닥판(KS F 4729)의 내분포압성시험방법에 의한다.</p> <p>(3) 골재의 염분함유량: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시험 방법(KS F 2515)에 의하여 사용 잔골재에 대하여 시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제품 500개당 3개</p> <p>(2) 압축강도시험:사용콘크리트 15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p> <p>(3) 휨강도 시험:제품 500개당 3개</p> <p>(4) 골재의 염분함유량시험:사용골재 50톤당 10킬로그램</p>
<p>8. 경량기포콘크리트 조립식부재(벽판·바닥판·지붕판)</p>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 4914)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여 사용 경량기포콘크리트에 대하여 시험한다.</p> <p>(2) 휨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KS F 4914)의 휨강도시험방법에 의한다.</p> <p>(3) 골재의 염분함유량: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골재의 염화물 함유량시험방법(KS F 2515)에 의하여 사용 잔골재에 대하여 시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제품 500개당 3개</p> <p>(2) 압축강도시험:사용 경량기포콘크리트 30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p> <p>(3) 휨강도시험:제품 500개당 3개</p> <p>(4) 골재의 염분함유량시험:사용골재 50톤당 10킬로그램</p>
9. 목재창호 및 틀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함수율):함수율측정기를 사용하거나 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창문의 목재틀재(KS F 3108)의 함수율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00매당 3매</p>
10. 콘크리트창호 및 틀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휨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KS F 2407)에 의하되, 공시체는 창호틀의 제작시방에 의하여 단면 15센티미터×4.5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로 제작한 재령 4주의 것으로 하고, 지간은 45센티미터로 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제품 500매당 3매</p> <p>(2) 휨강도시험:사용 콘크리트 100세제곱미터당 공시체 3개</p>
11. 알루미늄 창호 및 틀	창호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하되, 창호를 가공 또는 조립만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등에 의하여 틀재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p> <p>나.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00매당 3매</p>
	틀재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인장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압출형재(KS D 6759)의 인장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제품 5천킬로그램당 3개</p> <p>(2) 인장강도:제품 5천킬로그램당 시험편 3개</p>

12. 철재창호 및 틀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00매당 3매</p>
13. 합성수지 창호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하되, 창호를 가공 또는 조립만을 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등에 의하여 틀재의 적합여부를 확인한다.</p> <p>나.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00매당 3매</p>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인장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인장강도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충격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합성수지 창·문 및 틀(KS F 3117)의 충격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p> <p>(1) 치수검사:원료배합 1회용량에 의한 생산제품 5개</p> <p>(2) 인장강도시험:원료배합 1회용량당 시험편 10개</p> <p>(3) 충격시험:원료배합 1회용량당 시험편 10개</p>
14. 고압벽돌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규회벽돌(KS L 4204)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점토벽돌(KS L 4201)의 흡수율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만매당 5매</p>
15. 고압블록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압축강도:고압벽돌의 압축강도의 시험방법과 같다.</p> <p>(2) 흡수율:고압벽돌의 흡수율의 시험방법과 같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천매당 5매</p>

16. 토공벽돌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시멘트벽돌(KS F 4004)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의하되, 캡핑은 토공모르터를 사용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만매당 5매</p>
17. 토공블록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압축강도):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속빈시멘트블록(KS F 4002)의 전체의 단면적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되, 캡핑은 토공모르터를 사용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5천매당 5매</p>
18. 토공기와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측정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휨파괴 하중: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휨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흡수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천매당 5매</p>
19. 가압시멘트판기와	<p>가. 치수등:공통사항의 치수등의 시험방법에 의한다.</p> <p>나. 품질</p> <p>(1) 휨파괴 하중: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휨시험방법에 의한다.</p> <p>(2) 흡수율:한국공업규격이 정하는 가압시멘트판기와(KS F 4029)의 흡수시험방법에 의한다.</p> <p>다. 로트의 크기 및 시료수:1천매당 5매</p>

## □ 개정이유 □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의 생산기준을 강화하여 주택자재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이 개정(1992. 7. 25. 대통령령 제13,700호)되어 공동주택에의 쓰레기투입시설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 가. 주택단지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각층별·주택별 쓰레기투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쓰레기투입시설의 규격 및 마감등에 관한 기준을 삭제함(제9조 및 별표 5).
- 나. 주택자재생산업자는 그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 자체품질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자체품질시험 항목을 종전의 치수검사·압축강도시험외에 휨파괴하중시험 및 염분함유량시험등의 시험항목을 추가하여 자체품질시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제17조제1항 및 별표 6의 2)
- 다. 우량주택자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이를 건설부소속 1급 공무원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던 것을 국립건설시험소장으로 함(제27조제2항)
- 라. 주택자재의 치수 및 품질기준을 한국공업규격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경량기포콘크리트조립식부재·알루미늄창호틀재 및 합성수지창호틀재가 주택자재생산업 등록대상 주택자재로 추가됨에 따라 그 치수 및 품질기준을 정함(별표6 및 별표7) <건설부 제공>